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442

제출연월일 : 2009. 2. 2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9조).

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기술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의3).

라. 동물치료소의 지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28조).

마.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예외사유를 정함(안 제30조).

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의 공개에 관하여 정함(안 제3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8. 12. 26. ~ 2009. 1. 15.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 ①시장은 법 제9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반인이나 자치구청장 등의 신청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 :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10년까지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③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부터 시지정문화재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6항중 “제16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3을 삭제한다.

제3장제2절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동물치료소의 지정) 시장은 자치구청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 장의 추천을 받아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동물치료소를 지정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후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3장제2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①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회 이상 당해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 ①시장은 법 제9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반인이나 자치구청장 등의 신청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 :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10년까지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③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시장은 시지정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제19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다만, 시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부터 시지정문화재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②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시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법 제9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3(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4인 2.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의 선정 및 평가 2.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의 지정 ⑤시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⑥기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28조(동물치료소의 지정) 시장은 자치구청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동물치료소를 지정한다.
제30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생략) ②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기·예능보유자후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기·예능보유자후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0조의2(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①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회 이상 당해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위원회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 및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傳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72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5조 (준용규정) ①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4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90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시·도지사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청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신청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10년까지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제3조의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傳授)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2(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26조의2(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는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수 교육"은 "기·예능 공개"로 본다.

제26조의3(기·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제26조의4(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행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하는 건설 공사가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2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6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